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1. 10. 21.>
-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(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)
- 1.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
- 2.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3.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4.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5.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6.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
- 7. 법 제406조제1항(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)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
- 8. 법 제406조제3항(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)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
- 9. 법 제406조제4항(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
- 10. 제9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 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
- 11. 제9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·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
- 12.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
- 13.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
- 14. 제9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한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입금 한도를 위반한 경우
- 15. 제9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입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
- 16. 제213조를 위반하여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
- 17. 제2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·게시하지 아니한 경우
- 18. 제2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19. 제2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- 20.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